\star

문서번호	교육청소년과-8719	
결재일자	2015.4.10.	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

담 당	0동사초5당	교육청소년과장		부구청장
유현정	황지연	최병재	도일환	04/10 김병환
협 조	기획예산과장 규제개혁담당 주무관	이용식 김용환 김하연		



지원특별시 성복구 어린이 친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

2015. 4

교육문화복지국 교육청소년과

『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』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

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사전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 개정 조례안의 입법안을 확정하고자 함

I 추진절차

- □ 『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』 일부 개정 계획
 - 부구청장 방침(교육청소년과-5713, 2015. 3. 12)
- □ 『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』
 입법예고
 - O 입법예고 기간 : 2015. 3. 19 ~ 2015. 4. 8
 - 입법예고 방법 :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
 - O 의견제출 사항 : 없음
- □ 영향평가 의뢰
 - 부패영향평가 결과 : 개선권고
 - (기존안) 제11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☞ (결과반영) 제11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O 인권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O 성별영향분석 평가 : 원안동의

○ 아동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□ 법제심사 의뢰(기획예산과)

○ 법제심사 결과 : 이견 없음

Ⅱ 주요 개정내용

□ 주요내용

- 조례 제명 변경
 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⇒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
- O 조문 개정
 - 「아동복지법」제3조에 따라 "아동" 용어의 정의 변경
 - · 조례 제2조제2호 중 "12세 이하의 어린이" ⇒ "18세 미만의 사람"
 - 조례 제1조 ~ 제10조, 제14조, 제16조의 내용 중 "어린이"와 "어린이" 친화도시" ⇒ "아동", "아동친화도시"로 변경

Ⅲ 향후일정

□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 : 2015. 4. 15

□ 구의회 심의 : 2015. 4. 23 ~ (제234회 임시회)

□ 조례공포 및 구보 게재 : 2015. 5. 28

붙임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